

<p>○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함.</p> <p>4. 검토의견</p> <p>○ '99.12.31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해당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서 문제점 없음.</p> <hr/>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p> <p>제2조중 “500,000원”을 “700,000원”으로 하고,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회기수당) 회원에게는 회기일수에 일액 80,000원을 곱한 금액의 회기수당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교육위원회의 회의(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p> <p>제5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동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및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정액표에서 의장·부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위원은 제2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hr/>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